

카페&베이커리, 도시락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사용허가 특수조건은 육군 제6128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와 000 대표 000(이하 "사용인"이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000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와 의무)

- ① "부대"는 복지시설 및 기금관리 운영(육규규정 제2장 17조)에 의거 "사용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감독 및 통제를 위한 관리관(복지부사관)을 둔다.
- ② "부대"는 "사용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사용인"은 영업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③ "부대"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영업에 대하여 행정 법규상 필요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사용인"은 "부대"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상호협약으로 체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사용인"은 협약이행, 부대방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대"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대" 관계자의 영업장 출입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인"의 사용허가 입찰희망에 의한 **2026년 0월 00일부터 2029년 00월 00일까지(3년)**로 하며, "사용인"이 사용허가 중 사용허가 해지(중도포기)를 원할 경우 "부대"에 **사용허가 포기(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사용인"은 **사용료를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 ⑧ "사용인"의 1년차 **연간사용료는 낙찰가**이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1차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사용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사용료가 50만원 초과시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계약 당시의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가산 납부하고, 납부기일 초과 시 가산금(중도가산금)을 부과한다.

- ⑨ 낙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사용인"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관련 원본 서류를 14일 이내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사용인"은 연간 사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⑪ "사용인"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기 일체(비품, 소모품 등의 교체, 종업원의 급여, 시설수리 및 보수, 위생/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비용)를 부담한다.
- ⑫ "사용인"은 "부대"의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이를 위반할 경우 해지 및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 ① 이용대상은 전 장병 및 군무원, 군가족 등 이용객으로 하며, 신분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서류를 확인하여 출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2026년 0월 0일 부터 영업(갱신)을 개시하며, 그 시간은 10:00부터 19:00 까지, 주 5일 운영한다. 단, 작전·훈련 및 기타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대"는 휴장 및 영업시간을 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부대" 승인 없이 무단휴업을 할 수 없으며, 개인 사정으로 임시휴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운영시간을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 근무일 3일 전에 "부대"의 승인을 얻은 후 5일 이내로 임시휴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사용인"이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고정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대"에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한 후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사용인"은 "부대"의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영업 관련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⑥ "사용인"은 월별 매출 현황을 유지하고 "부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월별 결산 현황을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며, "부대"의 공공 목적에 의하여 판매대장 등의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업체명	대표자	월 매출액	지출				월 순이익	비고
			월 재료비	종업원 급여	잡비	사용료		

- ⑦ "사용인"은 금전등록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장병들의 카드 이용거래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제반 영수증(현금포함)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⑧ "사용인"은 "부대"의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⑨ 판매품목에 대한 배달은 사단 및 직할대에 한하여 가능하며, "부대"측은 필요에 따라 배달지역을 "사용인"과 협의하 조정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⑩ "사용인"은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부대"에 설비, 장비, 비품 등에 관한 비용 및 권리금 영업권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제4조 (판매품목 및 가격)

- ① 판매품목 및 가격은 "부대"와 "사용인"의 상호 협의한 내용을 따르며, 임의로 품목 및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판매품목은 일반적인 군장물품과 피복류 또는 오버록에 해당되는 물품이며 영외 매점(PX)과 겹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없으나, 부대 또는 장병 요구시에는 "부대"측과 협의하 품목을 추가 할 수 있으며 세부품목 및 가격은 부대와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
- ③ "사용인"이 취급하는 품목의 가격은 부대 인근지역(경남 함안군) 유사업종의 평균 가격 수준으로 "부대"와 상호 협약을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 "사용인"이 취급하는 판매품목·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인"과 "부대"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이때 제출 서류는 원자재 인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인"과 "부대"는 운영협약서를 수정 및 날인하여 보관한다. (가격/품목 통제 필요시)
- ⑤ 외제품 취급 시 "사용인"은 소정의 통관절차를 필한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사용인"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및 공제증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는 "부대"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판매가격의 확인을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카드 거래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⑦ "사용인"은 운영시간, 품목 및 가격표를 사업 매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⑧ "사용인"은 판매·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부대"에 독점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및 조정) "사용인"은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조정을 "부대"에 요청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사용인"은 운영협약서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의 10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기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7조 (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제한사항)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사용제한 사유 발생시 허가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에 대하여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국가적 재난 선포, 전시예 준하는 사태 발생, 훈련/검열 등 시행
2. 군기강 확립을 위한 일과 중 장병의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대비태세 유지, 보안 등의 사유에 의한 야간 운영시간 통제
4. 천재지변에 의한 인원 통제시
5. 대규모 부대 훈련으로 인한 병력 통제시 등

제8조 (비용부담 등 처리)

- ①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파손 시 "사용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부대"가 제공한 기존 건물 설비·집기류 외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인"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는 안전점검을 관계기관에 수검 요구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상 그 설치로 인한 건물구조·소방·전기 등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사용인"은 모든 설비 또는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로서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설비 및 장비·비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중 일어난 고장은 **즉시 수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인"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인명,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을 지고, 배상/변상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천재지변 및 "부대"에 책임이 없는 기타 여하한 사유("사용인"이 관건을 성실히 하지 않는 등)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상, 상품의 망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부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사용인"은 점유면적 및 공유시설에 대한 청결 정돈을 업체 자체 또는 인근 업체 공동 책임으로 하고, 용역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모품 및 인건비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⑥ 원인 불명의 화재 및 기타 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부대"의 사고처리 조사 결과에 따라 "부대"의 자체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⑦ "사용인"은 부대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처분 등을 할 수 없고, "부대" 소유의 부대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의 파손, 훼손, 분실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원상회복하여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 ⑧ "사용인"은 계약종료 시 "사용인"이 설치한 장비 및 비품 등 시설 **투자분에 대해 "부대"에 일절 매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⑨ 협약의 해지, 사용허가 허가기간 만료시 및 기타사유로 더 이상 효력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 "사용인"이 설치 및 비치한 설비 및 비품 등은 분리 해체시 건물에 손상이 예상될 경우 그 소유권을 "부대"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며, "사용인"은 당해 설비 및 비품 등의 가액을 "부대"에 청구할 수 없고, "부대"는 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돌리기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대"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 필요시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⑩ "사용인"은 "부대"가 제공한 기존 건물 설비·집기류 외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의 부속물의 경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 또는 "부대"와 "사용인"간 협의 하에 정한 원상복구기간(15일)에 "부대"가 제공한 기존 건물 설비·집기류 외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설치 시 "부대"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청구 및 비용청구를 일체 할 수 없다.**

제9조 (기존건물 설비, 비품 등의 사용)

- ① 기존 건물 설비 비품 및 집기류 등의 소유권은 "부대"에 있으며, "사용인"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인"은 기존 건물에 설치된 전기단자, 상·하수도 배관, 지붕, 골조, 벽체 등의 구조적 결함은 "부대"가 유지보수하고 "사용인"은 모든 설비 및 장비, 비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운영 중 일어난 고장은 수리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소모품 및 인건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 ③ "사용인"은 허가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부대"의 소유 복지비품, 장비 및 집기류 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리 후 반환토록 한다.
- ④ "사용인"은 당해 시설 내에 손괴,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부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인"은 수리 또는 개보수 하여야 한다. 또한 손괴 및 도난을 증명 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예시: 월별 재산대장 등)

제10조 (투자설비 등 처리)

- ① "사용인"은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② 영업장 내 추가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은 "부대" 승인 하에 "사용인"이 부담하며, 허가 기간 만료 후 퇴거 시 "부대" 관계관 참여하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생 및 안전관리)

- ① "사용인"은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위생 및 화재·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한 "부대" 또는 관련 행정관서의 시정 요구 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오·폐수 처리에 대해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대"의 시책에 따라 지정장소에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매장 내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반기 1회 해충 방제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그에 따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 ④ "사용인"은 위생/안전 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재사고와 같이 "사용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⑤ "사용인"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발급 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비용의 부담)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위해 개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의 공공요금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별 계량기 설치 등 업무처리를 하며, 미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한 공공요금을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시설 공용면적에 대한 청결 유지 비용은 점유면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허가조건 및 운영협약 위반 시 조치)

- ① "사용인"은 협약 및 특수조건에 명시된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 "부대"는 "사용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 1. **1차 위반시 조치** :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내용 발생 및 불이행시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한다.**
 - 2. **2차 위반시 조치** : 1차 주의 조치 관련 내용 불이행 및 동일 반복 지적사항 발생, 기타 위반내용 발생시에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한다.**
 - 3. **3차 위반시 조치**: 2차 경고 불이행 및 동일 반복 지적사항 발생시 부대 복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사용허가 철회" 조치를 시설단에 요구한다.**
- ② "사용인"이 "부대"의 재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부대"는 "사용인"에게 국유재산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사용료 이외에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① "부대"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2. 당해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
 - 3. 거짓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4.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의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부대"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6. "사용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부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 7. "사용인"이 압류, 가압류, 파산선고, 부도 등의 사유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8. 원가 및 인건비 등의 가격인상, 영업수익 감소 등을 빙자하여 운영을 거부할 경우
- ② 본 내용의 각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시 "사용인"은 "부대"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없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인"의 "부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③ 사용허가 처분 취소 또는 철회 및 기타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부대"의 소유가 아닌 설비·집기류를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되 건물에 손상을 입게 해서는 아니되며 손상을 입게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사용허가 처분 취소 또는 철회 및 기타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사용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설비·집기류 중 신규업체와 매각 협상 후 매각되지 않은 물건은 사용허가 효력 상실일까지 "사용인"의 부담으로 영업점 외로 철거 및 반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에 손상을 입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대"에 그 매수나 보상 및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 효력상실일까지 영업점 외로 반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는 "부대"의 승인 하에 사용허가 효력 상실일로부터 7일까지 부대에서 제공한 일정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
- ⑤ 사용허가 효력 상실일까지 반입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3개월간 반입물 등을 보관하고 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부대"가 임의 처분해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때 반입물 철거 및 처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시 "부대"는 "사용인"에게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종업원의 고용 및 관리) "사용인"은 필요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고용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산업/재해 보상 등 고용/근로 관계관련 전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으며, "부대"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부대"내 교통법규 준수, 군사보호시설의 출입통제 등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으며 "부대"는 종업원에 대한 기지출입을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의 포기)

- ① "사용인"은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반입물 등을 반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② "부대"는 "사용인"의 소유권 포기 후 30일 간 반입물 및 기타 설비 등을 보관하고, 위 기간 내 "사용인"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당해기간 만큼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안의 책임)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과정 및 운영 중에 취득한 모든 군사기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절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보안규정 등** 부대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이행 도중이나 이행 후에도 최대한의 군사보안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보안사항에 관한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법령 및 기타 육군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8조 (여론조사에 대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가격 및 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는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치 요구할 시 "사용인"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한사항 발생 시 "부대"와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소송관할)

- ①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이용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대"에서 제공한 건물, 설비, 비품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의 운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인"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만일 "부대"가 사용자책임 기타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내부적으로 "사용인"에게 위 금액을 전액 구상할 수 있다.
- ③ "부대" 소유의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용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인"은 "부대"에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대"에 요구할 수 없다.
- ③ "사용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중도 포기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취소일(확정일)까지 2개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협약 및 특수조건과 관련하여 "부대"와 "사용인"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심 관할 법원은 "부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운영협약서 체결 및 사용허가기간 만료 처리)

- ① "사용인"은 운영일, 운영시간, 판매 품목 및 가격, 공공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부대"와 별도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부대"와 "사용인"은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

